# 부 산 지 방 법 원

제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8나55364(본소) 손해배상(기)

2018나55371(반소) 물품대금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현호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В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

담당변호사 정재훈

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. 8. 9. 선고 2016가단342964(본소), 2017가단

319428(반소) 판결

변론종결 2020. 4. 9.

판 결 선 고 2020. 4. 23.

## 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#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#### 1. 청구취지

가. 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89,642,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4. 10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30,909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4. 10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가. 원고: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6,859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4. 10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: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30,909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4. 10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 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.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(피고 주장과는 달리 제1심에서도 워고에게 피 고의 단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, 제1심 판결문 제5~6 면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거 계약에 따라 납품한 목적물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고에게 민법 제668조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인정 한 것으로 보이는바. 이 같은 제1심판단에 어떠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고 보이지 않는다. 따라서 워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계약해제권을 햇 사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. 한 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해 피고로부터 도급대금 28,545,000원을 반환받게 되고.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. 워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워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가 제1심이 인정한 4.238.553원을 넘어 61.097.553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.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)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"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" 부분을 "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에 존재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1)"로

<sup>1)</sup>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에서도 민법 제668조를 근거로 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였으나,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와 같이 수정한다.

고치고,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"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" 부분을 "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원상회복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"로 피고 주장을 일부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,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태규

판사 위은숙

판사 정승화